

● 特別寄稿 ●

配電規程制定 着手와 그 隘路點

Certain Problems in Enactment of Regulations for Power Distribution

高炳烈

(配電規程制定 實務責任委員)

1. 序 言

우리나라의 配電設備는 그 設備의 大部分이 電力會社의 設備이며 그동안 이 設備는 電氣設備 技術基準令과 電力會社 内規로 定하여진 配電設備 設計基準에 依해 建設되어 왔다.

그러나 自家用 設備는 그 適用基準이 基準令外는 없어 不得不 電力會社 内規를 準用하는 不便이 있었다. 그러므로 電氣界에서는 統一的으로 使用할 수 있는 配電設備에 關한 電氣技術規程 制定이 要請되고 있으며 그리하여 이번에 이 配電規程 制定을着手하게 된 것이다.

이 規程은 모든 配電設備의 設計, 工事, 檢查等의 業務에 從事하는 사람들이 安保上 치켜야 할 技術的 事項을 定하는 것으로서 電氣設備 技術基準令에 定하여져 있는 事項을 詳述하는 外에 配電設備 建設時 基本이 되는 條件이나 計算式 施工方法等 配電設備의 保安을 確保하는데 重要한 事項을 詳細히 規定하고자 하는 것이다.

2. 制定方針

가. 制定範圍

우리나라의 一次 配電系統은 3.3kV, 6.6kV의 非接地 系統과 5.7kV, 11.4kV 및 22.9kV의 共通 中性線 多重接地 系統이며 또한 2次配電系統도 110V, 220V, 110/220V, 220/380V로 多岐多樣하다.

이 規程에는 '勿論 이 모든 設備를 包含시켜 制定할 것이다.'

나. 規程性格

電氣設備 技術基準令은一般的으로 그 内容이 檢查 또는 維持基準이라 말할 수 있다. 어떤 性格의 配電規程으로 만들어야 되느냐에 對하여는 여러 角度의 意見이 있을 수 있겠으나 나의 意見으로서는 序言에서 言及한 바와같이 設計工事 및 檢查의 一切을 包含한 性格의 規程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안다.

다. 規程內容

規程內容은 義務的 事項, 勸告的 事項과 推獎的 事項의 3種으로 區分하며 이 事項은 各己 다음과 같이 規定코자 한다.

① 義務的 事項

電氣設備 技術基準令에서 定하여져 있는 事項과 規定制定 委員會의 審議結果 施工上 特히 保安이 必要하다고 判斷되는 事項

② 勸告的 事項

電氣設備 技術基準令에 規定되어 있지 않은것으로서 委員會가 審議한 結果 施工上 保安에 關하여 配慮를 要한다고 判斷되는 事項

③ 推獎的 事項

電氣設備 技術基準令에 規定되어 있지 않으며 委員會에서 審議한 結果 서어비스上, 經濟上 또한 其他 理由로 特히 推薦獎勵코자 하는 事項

라. 規程作成上 留意事項

① 優先 電氣設備 技術基準令을 尊重하여 이에 準據하여 抽象的인 法形式에 사로잡힘이 없

이 이것을 平易하고 分明하게 記述하며
 ② 圖表 計算式을 豊富하게 挿入하여 具体的
 이면서도 詳細하게 表現하며
 ③ 技術基準令에 없는 事項을 補充 補完하고
 ④ 用語使用에 있어 嚴格性을 期하며
 ⑤ 各界의 問題點을 充分히 把握하여 全國的
 立場에서 統一된 것이 되도록 留意할 것이다.

3. 規程의 構成

이 配電規程은 아래와 같이 構成되며 한다.

第一章 總則

一般事項, 用語, 電線路, 電線, 接地工事, 機械器具의 施設, 障害 및 災害防止.

第二章 架空電線路

一般事項, 支持物, 架空電線의 施設, 碍子, 機械器具 및 保安裝置, 保安工事, 保護線等의 施設, 特定架空電線路.

第三章 引込線

一般事項, 低壓架空引込線, 低壓引込線의 屋側屋上部分의 施設, 低壓連接引込線, 高壓引込線, 地中引込線.

第四章 地中電線路

一般事項, 地中電線路의 施設, 地中電線의 種類 및 構造, 케이블의 接續

第五章 特殊電線路

一般事項, 屋側電線路, 屋上電線路, 터널內電線路, 水上電線路, 水底電線路, 地上電線路, 橋梁等에 施設하는 電線路, 電線路專用橋等에 施設하는 電線路, 絶壁에 施設하는 電線路, 屋内에 施設하는 電線路

附 錄

各種計算式, 圖表, 施工法

4. 委員會構成 및 制定日程

가. 委員會 構成

配電規程構成制定委員會는 委員長(辛基祚 韓國原子力技術(株) 首席副社長)과 副委員長 2名 그리고 委員 15名 幹事 1名 都合 19名으로構成되어 있으며 規程初案 作成을 為해 委員 15

名中 10名과 幹事 1名 計 11名의 實務 委員이 委嘱되어 이미 作業에 臨하고 있다.

나. 制定日程

配電規程의 制定은 아래와 같이 그 日程이 豫定되고 있다.

作業別	期間
初案作成 第一, 二章	'81. 7 ~ 81. 12
第二章	82. 1
第四章	82. 2
第五章	82. 3
附 錄	82. 4 ~ 82. 5
初案審議	82. 6 ~ 82. 10
印 刷 普 及	82. 11 ~ 82. 12

5. 制定上 隘路點

가. 規程內容을 어느 範圍까지 収錄하며 또한 어느程度의 深層部까지 反映할 것인가가 어렵고 또 이 規程이 모든 電氣界에 對해 不偏不黨하여야 하며 또한 모든 關係者가 解釋運用함에 있어 異意가 없고 쉽게 遵守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内容이 充實하고 權威있는 規程을 制定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나. 現在 우리나라의 電氣設備 技術基準令, 韓國工業規格, 電氣用品 技術基準令等에서 使用되는 用語는 때로 그 用語의 表記法이 달라 무엇을 基準으로 할 것인가의 問題點이 있다.

다. 우리나라가 選擇 使用하고 있는 22.9kV의 共通 中性線 多重接地 方式은 同一電壓과 方式面에서 世界에서 혼하게 볼 수 없는 方式이기 때문에 손쉽게 求할 수 있었고 또한 參考가 될 수 있는 外國의 데이터等이 많지 않아 隘路가 되고 있다.

6. 結 言

이 配電規程 制定에는 위에서 말한바 있는 豫想되는 隘路外에도 앞으로 作業中에도 繼續 問題點이 起起될 것이므로 各界의 高見이 絶對 必要하며 成功裡에 이 規程制定이 豫定된 日程내에 마칠 수 있도록 많은 분의 協助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